

23 관세사 무역실무(상) 이론편 정오표

2022-06-15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6	심화이론 박스 내 2. 일반거래	대외무 어 법상	대외무 역 법상
47	심화이론 박스 내 (5) 특송화물수령증?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제25조)	(5) 특송화물수령증?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제25조)	(5)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제25조)
141	중간 도식 서류상환방식의 거래과정	매도인(대리인)	매수인(대리인)
154	㉠ 상환청구불능조건	㉠ 상환청구불능조건 : 원칙적으로 무소구조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URF 제한적 상환가능조건)	㉠ 상환청구불능조건 : 예외적으로 소구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주로 무소구조건이다.
160	㉢ 취급금융기관의 제한 :	㉢ 취급금융기관의 제한 : 대부분 ~ 팩토링활용 ~ 된다.	㉢ 취급금융기관의 제한 : 대부분 ~ 포페이팅 활용 ~ 된다.
163	1) 은행의 경우 마지막 문장	또한 외국환, 지급결제 업무 등에 대한 교차판매의 기회도 있다. 무엇보다도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물적·인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삭제
175	2) 지정은행(Nominated Bank)	연지금은행	연지금은행
177	(1) 신용장 개설의뢰	매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181	2)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취소불능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지급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UCP500 제8조). 취소 불능신용장의 매입은행도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매입 은행은 신용장 상에 소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그 이전의 당사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취소 불능신용장의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매입 은행은 신용장 상에 소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그 이전의 당사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확인 은행은 상환청구권 (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UCP600 제8조).
183	(1) 일람불신용장(sight credit) 셋째줄	환어음 및 또는 서류의	환어음 및 서류의
191	4) 매입은행과 추심의뢰은행	4) 매입은행과 추심의뢰은행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정당하게 발행한 어음의 매입(추심의뢰 포함)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응하는 은행을 말하며 이러한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은 수출신용장과는 달리 필수적인 관계당사자는 아니다.	4) 추심의뢰은행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할 때 이에 응하는 은행을 말하며 이러한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신용장과는 달리 필수적인 관계당사자는 아니다.
194	7) 어음의 형식 및 발행조건	7) 어음의 형식 및 발행조건 ㉠ 어음의 형식 내국신용장상의 물품대금의 청구를 위한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금 환어음이어야 한다. ㉡ 어음의 발행 조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제조 공정별 분할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대금청구조건 ① 대금청구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일람지급)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금 방식이어야 한다. ③ 지급조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제조 공정별 분할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29	(6) 확인은행의 권리와 의무	UCP600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UCP600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